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021번지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

매도인(甲)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우리자산신탁(주)(이하 “甲” 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 “乙” 이라 함)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 부동산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

- 다 음 -

###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등)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원(W-, VAT포함/없음)에 乙에게 매도한다. (\* 세부내역 별지 2. 목록기재)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공급가격	지급일자
계약금	₩-	수의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합 계	₩0-	VAT없음

③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④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지정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우리자산신탁(주)]

제2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

④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

**제5조 (제세금 등)** 공매부동산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전유 및 공용 부분을 막론하고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공매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료,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이므로, 乙은 공매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자 기준의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 후 관리비완납증명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乙은 甲에게 관리비 및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

2. 공매부동산에 대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등)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④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0조 (임대차 및 인도·명도책임)**

①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2025.03.20.~2025.03.26. 기준) 및 상가건물 임대차열람(2025.04.01. 기준) 결과, 별도의 전입내역 및 임대차현황은 없으며, 甲이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동의한 건은 없으나, 기준일 이후로 甲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대차 되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완전히 표시하는 수단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乙이 공매응찰(매매계약) 전에 직접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를 관할주민센터(세무서) 전입세대열람(등록사항 열람)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 조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별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확인 책임은 乙에게 있다.

② 명도책임은 乙에게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乙이 (승계하여)책임지는 조건이다. 乙은 매매목적부동산을 현존상태로 매수하기로 하며, 매매목적부동산을 직접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乙은 매매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甲에게 청구하는 경우 포함), 그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전적으로 乙이 책임지고 甲을 면책시켜야 한다.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영업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의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④ 본 조 제 '①' 항 내지 '③' 항의 권리제한사항을 乙은 충분히 인지하고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乙는 甲에게 매매목적부동산의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 제11조 (소송 등 권리제한사항)

① 매매목적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본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물권이 접수될 수 있다. 乙은 아래와 같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한물권【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 기타】에 대하여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모든 제한물권을 인수(또는 해소)하여야 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 • 소송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합200621	사해행위취소	수성레이크 지역주택조합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② 乙은 본 매매계약 이후 위 소송을 원인으로 기 체결한 매매계약을 乙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금원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③ 甲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취소(말소)되어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乙명의에서 위탁자 (주)수\*\*\*\* 명의로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甲에게 일체의 이의【민사, 형사, 행정, 민원, 기타 금원, 등 이유불문】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기로 한다.

④ 본 조 제 '①' 항 내지 '③' 항의 권리제한사항을 乙은 충분히 인지하고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乙는 甲에게 매매목적부동산의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_\_\_\_\_ (인)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① 본 수의계약에 따른 매수자(대리인 포함,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 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던 바,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후 10년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 ③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인(甲)

우리자산신탁(주)

110111 - 2003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대표이사 김범석 (지배인 : 김 해 진) (인)

매수인(乙)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021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셀 제 동  
 [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2길 100(파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별지기재와 같음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별지기재와 같음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021 대 16637.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별지기재와 같음

제101동		단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2	201	84.9963	46.4374	35	13	1303	84.9906	46.4343
2		202	84.9906	46.4343	36	14	1401	84.9963	46.4374
3		203	84.9906	46.4343	37		1402	84.9906	46.4343
4	3	301	84.9963	46.4374	38	15	1403	84.9906	46.4343
5		302	84.9906	46.4343	39		1501	84.9963	46.4374
6		303	84.9906	46.4343	40	1502	84.9906	46.4343	
7	4	401	84.9963	46.4374	41	16	1503	84.9906	46.4343
8		402	84.9906	46.4343	42		1602	84.9906	46.4343
9		403	84.9906	46.4343	43	1603	84.9906	46.4343	
10	5	501	84.9963	46.4374	44	17	1701	84.9963	46.4374
11		502	84.9906	46.4343	45		1702	84.9906	46.4343
12		503	84.9906	46.4343	46		1703	84.9906	46.4343
13	6	601	84.9963	46.4374	47	18	1801	84.9963	46.4374
14		602	84.9906	46.4343	48		1802	84.9906	46.4343
15		603	84.9906	46.4343	49		1803	84.9906	46.4343
16	7	702	84.9906	46.4343	50	19	1901	84.9963	46.4374
17		703	84.9906	46.4343	51		1903	84.9906	46.4343
18	8	801	84.9963	46.4374	52	20	2001	84.9963	46.4374
19		802	84.9906	46.4343	53		2002	84.9906	46.4343
20		803	84.9906	46.4343	54		2003	84.9906	46.4343
21	9	901	84.9963	46.4374	55	21	2102	84.9906	46.4343
22		902	84.9906	46.4343	56		2103	84.9906	46.4343
23		903	84.9906	46.4343	57	22	2202	84.9906	46.4343
24	10	1001	84.9963	46.4374	58		2203	84.9906	46.4343
25		1002	84.9906	46.4343	59	23	2302	84.9906	46.4343
26		1003	84.9906	46.4343	60		2303	84.9906	46.4343
27	11	1101	84.9963	46.4374	61	24	2402	84.9906	46.4343
28		1102	84.9906	46.4343	62		2403	84.9906	46.4343
29		1103	84.9906	46.4343	63	25	2502	84.9906	46.4343
30	12	1201	84.9963	46.4374	64		2503	84.9906	46.4343
31		1202	84.9906	46.4343					
32		1203	84.9906	46.4343					
33		13	1301	84.9963					
34	1302		84.9906	46.4343					

제102동					단위: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2	203	84.9906	46.4343	43	13	1301	59.9204	32.7373
2		204	84.9906	46.4343	44		1303	84.9906	46.4343
3		205	84.9963	46.4374	45		1304	84.9906	46.4343
4	3	302	59.9204	32.7373	46		1305	84.9963	46.4374
5		303	84.9906	46.4343	47	14	1401	59.9204	32.7373
6		304	84.9906	46.4343	48		1403	84.9906	46.4343
7		305	84.9963	46.4374	49		1404	84.9906	46.4343
8	4	401	59.9204	32.7373	50		1405	84.9963	46.4374
9		402	59.9204	32.7373	51	15	1501	59.9204	32.7373
10		403	84.9906	46.4343	52		1502	59.9204	32.7373
11		404	84.9906	46.4343	53		1503	84.9906	46.4343
12		405	84.9963	46.4374	54		1504	84.9906	46.4343
13	5	502	59.9204	32.7373	55		1505	84.9963	46.4374
14		503	84.9906	46.4343	56	16	1603	84.9906	46.4343
15		504	84.9906	46.4343	57		1604	84.9906	46.4343
16		505	84.9963	46.4374	58		1605	84.9963	46.4374
17	6	602	59.9204	32.7373	59		17	1703	84.9906
18		603	84.9906	46.4343	60	1704		84.9906	46.4343
19		604	84.9906	46.4343	61	1705		84.9963	46.4374
20		605	84.9963	46.4374	62	18		1801	59.9204
21	7	702	59.9204	32.7373	63		1802	59.9204	32.7373
22		703	84.9906	46.4343	64		1803	84.9906	46.4343
23		704	84.9906	46.4343	65		1804	84.9906	46.4343
24		705	84.9963	46.4374	66	19	1901	59.9204	32.7373
25	8	802	59.9204	32.7373	67		1903	84.9906	46.4343
26		803	84.9906	46.4343	68		1904	84.9906	46.4343
27		804	84.9906	43.4343	69		1905	84.9963	46.4374
28		805	84.9963	46.4374	70	20	2003	84.9906	46.4343
29	9	903	84.9906	46.4343	71	21	2103	84.9906	46.4343
30		904	84.9906	46.4343	72		2104	84.9906	46.4343
31		905	84.9963	46.4374	73		2105	84.9963	46.4374
32	10	1003	84.9906	46.4343	74	22	2203	84.9906	46.4343
33		1004	84.9906	43.4343	75		2204	84.9906	46.4343
34		1005	84.9963	46.4374	76		2205	84.9963	46.4374
35	11	1101	59.9204	32.7373	77	23	2303	84.9906	46.4343
36		1103	84.9906	46.4343	78		2304	84.9906	46.4343
37		1104	84.9906	46.4343	79		2305	84.9963	46.4374
38		1105	84.9963	46.4374	80		2403	84.9906	46.4343
39	12	1201	59.9204	32.7373	81	24	2404	84.9906	46.4343
40		1203	84.9906	46.4343	82		2405	84.9963	46.4374
41		1204	84.9906	46.4343	83	25	2503	84.9906	46.4343
42		1205	84.9963	46.4374	84		2504	84.9906	46.4343

제103동		단위: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3	301	59.9204	32.7373	14	11	1101	59.9204	32.7373
2		302	59.9204	32.7373	15	12	1201	59.9204	32.7373
3	4	401	59.9204	32.7373	16	13	1302	59.9204	32.7373
4		402	59.9204	32.7373	17	15	1502	59.9204	32.7373
5	5	501	59.9204	32.7373	18	16	1602	59.9204	32.7373
6		502	59.9204	32.7373	19	17	1701	59.9204	32.7373
7	6	601	59.9204	32.7373	20	18	1801	59.9204	32.7373
8		602	59.9204	32.7373	21		1802	59.9204	32.7373
9	7	701	59.9204	32.7373	22	19	1902	59.9204	32.7373
10		702	59.9204	32.7373	23	20	2002	59.9204	32.7373
11	8	801	59.9204	32.7373	24	23	2302	59.9204	32.7373
12		802	59.9204	32.7373					
13	10	1001	59.9204	32.7373					

제104동		단위: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2	201	84.9398	46.4065	17	12	1201	84.9398	46.4065
2		202	84.9398	46.4065	18		1202	84.9398	46.4065
3	3	301	84.9398	46.4065	19	13	1301	84.9398	46.4065
4		302	84.9398	46.4065	20		1302	84.9398	46.4065
5	4	401	84.9398	46.4065	21	14	1402	84.9398	46.4065
6		402	84.9398	46.4065	22	15	1502	84.9398	46.4065
7	5	501	84.9398	46.4065	23	16	1601	84.9398	46.4065
8		502	84.9398	46.4065	24	17	1701	84.9398	46.4065
9	6	601	84.9398	46.4065	25	18	1801	84.9398	46.4065
10		602	84.9398	46.4065	26		1802	84.9398	46.4065
11	7	702	84.9398	46.4065	27	19	1901	84.9398	46.4065
12	8	801	84.9398	46.4065	28	20	2002	84.9398	46.4065
13		802	84.9398	46.4065	29	21	2101	84.9398	46.4065
14	9	901	84.9398	46.4065					
15		902	84.9398	46.4065					
16	10	1001	84.9398	46.4065					

제105동					단위: 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2	201	84.9963	46.4374	37	11	1101	84.9963	46.4374	
2		202	84.9906	46.4343	38		1102	84.9906	46.4343	
3		203	84.9906	46.4343	39		1103	84.9906	46.4343	
4		204	84.9963	46.4374	40		1201	84.9963	46.4374	
5	3	301	84.9963	46.4374	41	12	1203	84.9906	46.4343	
6		302	84.9906	46.4343	42		1204	84.9963	46.4374	
7		303	84.9906	46.4343	43		13	1301	84.9963	46.4374
8		304	84.9963	46.4374	44			1303	84.9906	46.4343
9	4	401	84.9963	46.4374	45	14	1401	84.9963	46.4374	
10		402	84.9906	46.4343	46		1403	84.9906	46.4343	
11		403	84.9906	46.4343	47	15	1501	84.9963	46.4374	
12		404	84.9963	46.4374	48		1503	84.9906	46.4343	
13	5	501	84.9963	46.4374	49	16	1504	84.9963	46.4374	
14		502	84.9906	46.4343	50		1602	84.9906	46.4343	
15		503	84.9906	46.4343	51		1603	84.9906	46.4343	
16		504	84.9963	46.4374	52		1701	84.9963	46.4374	
17	6	601	84.9963	46.4374	53	17	1702	84.9906	46.4343	
18		602	84.9906	46.4343	54		1703	84.9906	46.4343	
19		603	84.9906	46.4343	55		18	1801	84.9963	46.4374
20		604	84.9963	46.4374	56			1802	84.9906	46.4343
21	7	701	84.9963	46.4374	57	19	1803	84.9906	46.4343	
22		702	84.9906	46.4343	58		1901	84.9963	46.4374	
23		703	84.9906	46.4343	59		1902	84.9906	46.4343	
24		704	84.9963	46.4374	60		1903	84.9906	46.4343	
25	8	801	84.9963	46.4374	61	20	1904	84.9963	46.4374	
26		802	84.9906	46.4343	62		2003	84.9906	46.4343	
27		803	84.9906	46.4343	63		2004	84.9963	46.4374	
28		804	84.9963	46.4374	64		2103	84.9906	46.4343	
29	9	901	84.9963	46.4374	65	22	2202	84.9906	46.4343	
30		902	84.9906	46.4343	66		2203	84.9906	46.4343	
31		903	84.9906	46.4343	67	23	2301	84.9963	46.4374	
32		904	84.9963	46.4374	68		2303	84.9906	46.4343	
33	10	1001	84.9963	46.4374						
34		1002	84.9906	46.4343						
35		1003	84.9906	46.4343						
36		1004	84.9963	46.4374						

제106동					단위: 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3	301	59.9204	32.7373	12	15	1501	59.9204	32.7373
2		302	59.9204	32.7373	13	18	1801	59.9204	32.7373
3	4	401	59.9204	32.7373	14		1802	59.9204	32.7373
4		402	59.9204	32.7373	15	19	1901	59.9204	32.7373
5	5	501	59.9204	32.7373	16	20	2001	59.9204	32.7373
6		502	59.9204	32.7373	17		2002	59.9204	32.7373
7	7	702	59.9204	32.7373	18	21	2101	59.9204	32.7373
8	10	1001	59.9204	32.7373	19		2102	59.9204	32.7373
9	13	1301	59.9204	32.7373					
10	14	1401	59.9204	32.7373					
11		1402	59.9204	32.7373					

제115동 근린생활시설					단위: m <sup>2</sup>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번호	층	호수	건물면적	대지지분
1	1	101	21.9375	11.9757	4	1	104	21.0600	11.5060
2		102	21.0600	11.5060	5		105	21.0600	11.5060
3		103	21.0600	11.5060	6		106	21.0600	11.5060

<별지2>

## 매매대금 세부내역

순번	물건종류	동-호수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계
1	공동주택	101-201				
2	공동주택	101-202				
3	공동주택	101-203				
4	공동주택	101-301				
5	공동주택	101-302				
6	공동주택	101-303				
7	공동주택	101-401				
8	공동주택	101-402				
9	공동주택	101-403				
10	공동주택	101-501				
11	공동주택	101-502				
12	공동주택	101-503				
13	공동주택	101-601				
14	공동주택	101-602				
15	공동주택	101-603				
16	공동주택	101-702				
17	공동주택	101-703				
18	공동주택	101-801				
19	공동주택	101-802				
20	공동주택	101-803				
21	공동주택	101-901				
22	공동주택	101-902				
23	공동주택	101-903				
24	공동주택	101-1001				
25	공동주택	101-1002				
26	공동주택	101-1003				
27	공동주택	101-1101				
28	공동주택	101-1102				
29	공동주택	101-1103				
30	공동주택	101-1201				
31	공동주택	101-1202				
32	공동주택	101-1203				
33	공동주택	101-1301				
34	공동주택	101-1302				
35	공동주택	101-1303				
36	공동주택	101-1401				
37	공동주택	101-1402				
38	공동주택	101-1403				
39	공동주택	101-1501				
40	공동주택	101-1502				
41	공동주택	101-1503				
42	공동주택	101-1602				
43	공동주택	101-1603				
44	공동주택	101-1701				
45	공동주택	101-1702				
46	공동주택	101-1703				
47	공동주택	101-1801				
48	공동주택	101-1802				

49	공동주택	101-1803				
50	공동주택	101-1901				
51	공동주택	101-1903				
52	공동주택	101-2001				
53	공동주택	101-2002				
54	공동주택	101-2003				
55	공동주택	101-2102				
56	공동주택	101-2103				
57	공동주택	101-2202				
58	공동주택	101-2203				
59	공동주택	101-2302				
60	공동주택	101-2303				
61	공동주택	101-2402				
62	공동주택	101-2403				
63	공동주택	101-2502				
64	공동주택	101-2503				
65	공동주택	102-203				
66	공동주택	102-204				
67	공동주택	102-205				
68	공동주택	102-302				
69	공동주택	102-303				
70	공동주택	102-304				
71	공동주택	102-305				
72	공동주택	102-401				
73	공동주택	102-402				
74	공동주택	102-403				
75	공동주택	102-404				
76	공동주택	102-405				
77	공동주택	102-502				
78	공동주택	102-503				
79	공동주택	102-504				
80	공동주택	102-505				
81	공동주택	102-602				
82	공동주택	102-603				
83	공동주택	102-604				
84	공동주택	102-605				
85	공동주택	102-702				
86	공동주택	102-703				
87	공동주택	102-704				
88	공동주택	102-705				
89	공동주택	102-802				
90	공동주택	102-803				
91	공동주택	102-804				
92	공동주택	102-805				
93	공동주택	102-903				
94	공동주택	102-904				
95	공동주택	102-905				
96	공동주택	102-1003				
97	공동주택	102-1004				
98	공동주택	102-1005				
99	공동주택	102-1101				
100	공동주택	102-1103				

101	공동주택	102-1104				
102	공동주택	102-1105				
103	공동주택	102-1201				
104	공동주택	102-1203				
105	공동주택	102-1204				
106	공동주택	102-1205				
107	공동주택	102-1301				
108	공동주택	102-1303				
109	공동주택	102-1304				
110	공동주택	102-1305				
111	공동주택	102-1401				
112	공동주택	102-1403				
113	공동주택	102-1404				
114	공동주택	102-1405				
115	공동주택	102-1501				
116	공동주택	102-1502				
117	공동주택	102-1503				
118	공동주택	102-1504				
119	공동주택	102-1505				
120	공동주택	102-1603				
121	공동주택	102-1604				
122	공동주택	102-1605				
123	공동주택	102-1703				
124	공동주택	102-1704				
125	공동주택	102-1705				
126	공동주택	102-1801				
127	공동주택	102-1802				
128	공동주택	102-1803				
129	공동주택	102-1804				
130	공동주택	102-1901				
131	공동주택	102-1903				
132	공동주택	102-1904				
133	공동주택	102-1905				
134	공동주택	102-2003				
135	공동주택	102-2103				
136	공동주택	102-2104				
137	공동주택	102-2105				
138	공동주택	102-2203				
139	공동주택	102-2204				
140	공동주택	102-2205				
141	공동주택	102-2303				
142	공동주택	102-2304				
143	공동주택	102-2305				
144	공동주택	102-2403				
145	공동주택	102-2404				
146	공동주택	102-2405				
147	공동주택	102-2503				
148	공동주택	102-2504				
149	공동주택	103-301				
150	공동주택	103-302				
151	공동주택	103-401				
152	공동주택	103-402				

153	공동주택	103-501				
154	공동주택	103-502				
155	공동주택	103-601				
156	공동주택	103-602				
157	공동주택	103-701				
158	공동주택	103-702				
159	공동주택	103-801				
160	공동주택	103-802				
161	공동주택	103-1001				
162	공동주택	103-1101				
163	공동주택	103-1201				
164	공동주택	103-1302				
165	공동주택	103-1502				
166	공동주택	103-1602				
167	공동주택	103-1701				
168	공동주택	103-1801				
169	공동주택	103-1802				
170	공동주택	103-1902				
171	공동주택	103-2002				
172	공동주택	103-2302				
173	공동주택	104-201				
174	공동주택	104-202				
175	공동주택	104-301				
176	공동주택	104-302				
177	공동주택	104-401				
178	공동주택	104-402				
179	공동주택	104-501				
180	공동주택	104-502				
181	공동주택	104-601				
182	공동주택	104-602				
183	공동주택	104-702				
184	공동주택	104-801				
185	공동주택	104-802				
186	공동주택	104-901				
187	공동주택	104-902				
188	공동주택	104-1001				
189	공동주택	104-1201				
190	공동주택	104-1202				
191	공동주택	104-1301				
192	공동주택	104-1302				
193	공동주택	104-1402				
194	공동주택	104-1502				
195	공동주택	104-1601				
196	공동주택	104-1701				
197	공동주택	104-1801				
198	공동주택	104-1802				
199	공동주택	104-1901				
200	공동주택	104-2002				
201	공동주택	104-2101				
202	공동주택	105-201				
203	공동주택	105-202				
204	공동주택	105-203				

205	공동주택	105-204				
206	공동주택	105-301				
207	공동주택	105-302				
208	공동주택	105-303				
209	공동주택	105-304				
210	공동주택	105-401				
211	공동주택	105-402				
212	공동주택	105-403				
213	공동주택	105-404				
214	공동주택	105-501				
215	공동주택	105-502				
216	공동주택	105-503				
217	공동주택	105-504				
218	공동주택	105-601				
219	공동주택	105-602				
220	공동주택	105-603				
221	공동주택	105-604				
222	공동주택	105-701				
223	공동주택	105-702				
224	공동주택	105-703				
225	공동주택	105-704				
226	공동주택	105-801				
227	공동주택	105-802				
228	공동주택	105-803				
229	공동주택	105-804				
230	공동주택	105-901				
231	공동주택	105-902				
232	공동주택	105-903				
233	공동주택	105-904				
234	공동주택	105-1001				
235	공동주택	105-1002				
236	공동주택	105-1003				
237	공동주택	105-1004				
238	공동주택	105-1101				
239	공동주택	105-1102				
240	공동주택	105-1103				
241	공동주택	105-1201				
242	공동주택	105-1203				
243	공동주택	105-1204				
244	공동주택	105-1301				
245	공동주택	105-1303				
246	공동주택	105-1401				
247	공동주택	105-1403				
248	공동주택	105-1501				
249	공동주택	105-1503				
250	공동주택	105-1504				
251	공동주택	105-1602				
252	공동주택	105-1603				
253	공동주택	105-1701				
254	공동주택	105-1702				
255	공동주택	105-1703				
256	공동주택	105-1801				

257	공동주택	105-1802				
258	공동주택	105-1803				
259	공동주택	105-1901				
260	공동주택	105-1902				
261	공동주택	105-1903				
262	공동주택	105-1904				
263	공동주택	105-2003				
264	공동주택	105-2004				
265	공동주택	105-2103				
266	공동주택	105-2202				
267	공동주택	105-2203				
268	공동주택	105-2301				
269	공동주택	105-2303				
270	공동주택	106-301				
271	공동주택	106-302				
272	공동주택	106-401				
273	공동주택	106-402				
274	공동주택	106-501				
275	공동주택	106-502				
276	공동주택	106-702				
277	공동주택	106-1001				
278	공동주택	106-1301				
279	공동주택	106-1401				
280	공동주택	106-1402				
281	공동주택	106-1501				
282	공동주택	106-1801				
283	공동주택	106-1802				
284	공동주택	106-1901				
285	공동주택	106-2001				
286	공동주택	106-2002				
287	공동주택	106-2101				
288	공동주택	106-2102				
289	근생	115-101				
290	근생	115-102				
291	근생	115-103				
292	근생	115-104				
293	근생	115-105				
294	근생	115-106				
계						